

의견제출서 · 소명제출서

PCT 용도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견해서에 대한 의견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요약서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기관】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발송일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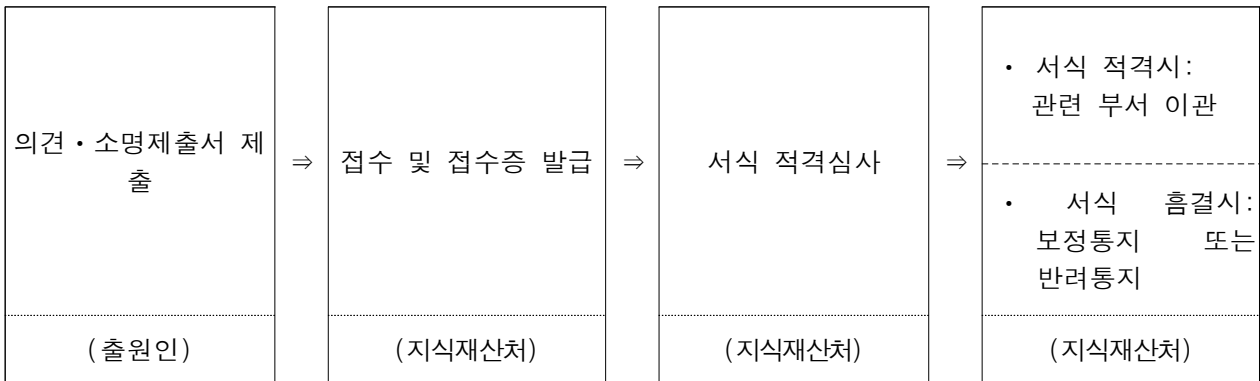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출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견해서에 대한 의견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받거나 출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제5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날인(서명)누락 소명	국제출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취하서에 출원인의 날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85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요약서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새로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8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국제출원이 「특허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취하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 또는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 그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제5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 PCT/KR2007/123456

2.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3.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를 합니다.

4.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5.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6. 【발송일자】란

이 서식을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는 제출기관의 서류(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취하통지서 등)에 적은 발송일자를 적습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견서 또는 날인(서명)누락 소명서 1통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